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3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2. 21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0. 12. 22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0. 12. 27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안이유

-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보완하여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수도사용자 등이 신고사항 미이행시 이행토록 권고 (안 제18조)
나. 수도관리의 책임은 군수이므로 사용자에게 대한 책임규정을 삭제 (안 제21조)
다. 급수장치에 관한 승계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승계하는 부분은 삭제함.(안 제22조)
라.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 부분은 삭제함.(안 제25조)
마. 일시급수 사용 요금의 선납은 법령의 미근거로 삭제함.(안 제35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규제가 강한 부분에 대하여는 완화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를 삭제할 시 일시급수 신청과 사용료 선납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안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제4항 삭제시 수도사용자 가족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먼저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갔을 때 미납된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승계권리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 답 : 취득전에 발생한 체납 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않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0. 12. 2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